

# 〈판례 설명〉

외부성기성형수술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 허가결정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호기302 결정 -



사건본인 000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별란의  
“남” 을 “여” 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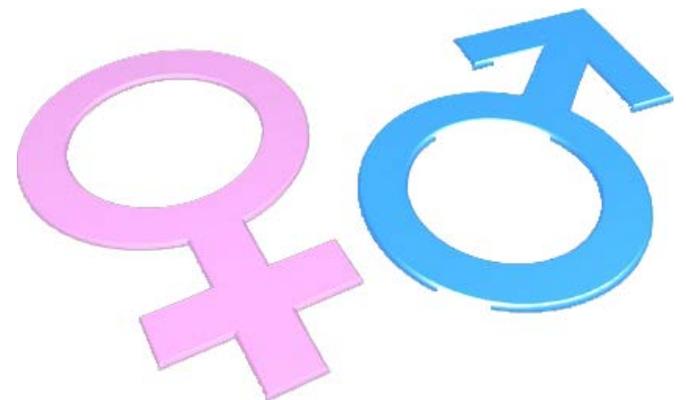


2017. 2.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재판장 신진화)은 외부성기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MTF에 대해  
**최초로 성별정정 허가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인은 여성으로 일상생활을 하며  
직장에서도 여성으로 대우받고 있었으나,**

**생식능력제거수술(고환적출수술) 만을  
받은 상태였기에**

**성별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성별정정 예규는 조사사항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를 규정하고 있고, 예규는 법률은 아니지만**

**성별정정 기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5호]**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성별정정을 허가하였습니다**

**여성으로서 성별정체성 확인에  
외부성기수술은 필수적이지 않음**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여러 이유로  
외부성기수술 없이 살아가고 있음**

**다양성과 소수자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사회에서 권리보호의 필요성 있음**

“이들의 외관이 일반적인 성별 기준에 미치지 못한  
다는 데서 오는 일반인의 혼란감은 ...외부성기 수술  
을 받지 않은 채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이 ... 성별  
정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겪게 되는 사회적 · 경제적  
· 인격적 고통에 비하면 당연히 감내되어야 할 것  
이기 때문이다.”

<결정문 중>

**이처럼 이번 결정은 성별정정에서  
외부성기수술 요구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한편으로 한계도 분명합니다**

- **생식능력제거수술은 여전히 요구되며**
- **예규 변경 없는 1심 법원의 판결이기에 모든 법원에 적용된다 볼 수 없으며**
- **결정을 내린 판사 역시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여 성별정정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14.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5)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요구되는  
과도한 제한

15. 한국 정부는...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인정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2015.11.5.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권고>

■ Not applicable ■ No ■ No data ■ Yes: only Gender Reassignment Therapy ■ Yes: Sterilisation and Gender Reassignment Surgery

그러나 트랜스젠더 남성/FTM에 대해서도 성기성형의  
부당성을 이야기한 결정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국제사회도 성별정정 요건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는 만큼,  
앞으로 수술 등 불필요한 요건 없는 성별정정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갔다 볼 수 있습니다

**Q & A**

**Q** 외부성기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MTF입니다  
법원에 이 결정을 보여주면서 성별정정을  
신청해도 되나요?

**A** 이야기한 바와 같이 1심 법원의 결정이기에 다른 판사들이 이 판례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선례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법원 판례와 예규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결정이 쉽사리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고, 구체적인 결과는 판사 개인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Q**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다른 법원에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 있나요?

**A**

이 결정이 한 번의 예외적인 사례로 남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판례를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인들의 구체적 상황, 개별 법원의 태도, 소송 전략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Q** **트랜스젠더 남성/FTM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트랜스젠더 남성/FTM의 경우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외부성기성형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결정이 있었고, 이후로 다른 지방법원들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결정이 여럿 있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모든 법원이 동일하게 받아들인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개별법원에 성별정정신청을 하기에 앞서서는 위 결정문을 첨부하는 것 외에 여러모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성별정정을 위한 자료나 준비서류 등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서류 준비 및 성별정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트랜스로드맵([www.transroadmap.net](http://www.transroadmap.net))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례나 성별정정 과정에서 판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한 경우에는 SOGI법정책연구회([www.sogilaw.org](http://www.sogilaw.org)) 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www.hopeandlaw.org](http://www.hopeandlaw.org)) 로 문의바랍니다.